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만보안 업무실태와 분석

2021년 05월 28일

지도교수 : 신 영 란

한국해양대학교 글로벌물류대학원 해운항만물류학과 29기 안 지 현



Conten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 방향 및 구성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항만보안의 의의 제2절 항만보안 관련 선행연구 제3절 항만보안 관련 법률

제3장 항만보안 업무 실태

제1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만보안 업무 제2절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에 대한 항만보안 업무 실태 분석 제3절 항만시설보안료 법률 체계 분석

제4장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항만보안 업무 개선방안

제1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성 질병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 제2절 항만보안 인력 운영 방안 제3절 감염병 관련 항만시설보안료 현실화 방안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과제

1. 서 론

◆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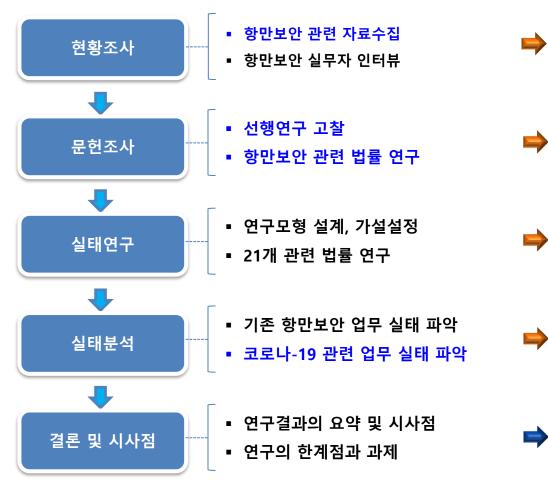
-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 특성상 해외 수출입물류의 대부분은 공항과 항만을 이용함.
- 우리나라 항만의 보안업무는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강화됨.
- 중국 우한에서 시작한 코로나-19는 홍콩을 거쳐 전세계로 퍼지면서 백신 및 치료제가 나온2021년 5월 1일 현재에도 아마존변이, 인도변이 등이 전세계를 위협함.
-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항만의 보안업무는 기존에 없던 감염성 질병 관련 업무가 중요해짐.
- 국제항만의 감염성 질병에 따른 업무개선이 필요하게 됨.

■ 연구 목적

- 기존의 테러, 밀수, 밀입국 등 전통적 보안 업무에서 보건안보, 바이오보안 등 비전통적 보안업무에 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코로나-19 이후의 항만보안 업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를 통해 항만보안 업무에 바이오보안 업무를 추가하여 바이오테러, 보건안보 위협에 원활히 대처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1. 서 론

→ 연구방법 및 구성



- 항만보안 업무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도출 및 업무현황 파악
- 선행연구를 통한 항만보안 업무의 개념

 정리 및 관련 법률 검토
- 실태 파악을 통한 연구모형 설계 및 약 22개 법률 비교 분석
- 실태 분석을 결과에 따른 코로나-19 이 후 업무 개선방안 도출
- 본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항만보안 업무의 개선 방안 제시

2. 이론적 고찰(1/1)

항만보안의 의의

- 항만은 국내항만과 국외항만(국제항만)으로 나누어지며 국제항만은 우리나라 해외물류의 대부분을 수입 및 수출하는 장소임.
- ① 국제항만에는 선박, 하역장비, 기반시설, 항만인력 등이 있으며 특히 외국선박이 입출항하며 다양한 외국인의 출입이 많은 곳으로 국가의 관리가 필요한 장소임.
- 항만의 '보안'은 개념적으로 국가보안을 뜻 하지만 운영 측면에서는 기업적 운영방식을 따르다. 그리고 업무적인 측면에서는 국내외 항만에 대한 경비보안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 함.
- 항만보안을 정의 하자면 '항만'과 '보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의미로 여기에서 말하는 '항만'은 '국제 항해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에 의해 운영되는 항만을 뜻 함.

2. 이론적 고찰(2/1)

선행연구(1/1)

연구자	주 제	분 석 내 용
양안희(2019)	물류보안제도가 수출 기업에 어 떠한 영항을 미치는지 실증연구	911테러는 우리나라 항만보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 우리나라 항만보안 환경의 변화 이유가 글로벌 공급사슬망 구축이나 물리적 테러 방지 등 다양하겠지만 중요한건 911테러가 우리 나라 항만보안에 미친 영향이다.
이민형·이정훈 (2015)	우리나라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물리적 보안 요인분석	첫째 시설방호 영역에서는 시설물점검, CCTV시스템 설비운영, 방벽 및 조명을 통한 물리적 보안 등을 강조하였다. 둘째 접근통제 영역에서는 출입절차마련, 검색대운영, 신원확인시스템, 보안인력의 상주 등을 강조하였으며 셋째 재해방지 영역에서는 화재경보기, 긴급피난구역지정, 비상연락망구축, 긴급대피 대응 인력 확보를 설명하였다.
신주철(2017)	항만보안 실태분석에 관한 연구	항만보안 업무를 우리나라 해양경찰과 일원화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 이유로 미국, 유럽연합 등 세계 선진국들이 항만보안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률과 관련 부처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다.
강민구·김화영 (2019)	우리나라 항만보안 강화를 위한 평가요인과 상대적 중요도 분석	첫째, 관련항만 내 유관기관들 간 정보공유를 위해 통합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둘째, 기존 하드웨어의 개선을 강조 셋째, 항만 보안인력들의 인력재배치의 필요성
이정훈·이민형· 김성우(2014)	항만보안인력의 전문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첫째, 항만보안에 대한 일원화 및 체계화 된 입법이 이루어져야한다. 둘째, 항만보안요원의 업무에 맞는 특화된 교육을 실시
조철규(2020)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우리나 라 특수경비 관련 언론보도 분 석 연구	첫째는 우리나라 민간경비 산업이 1976년 경비업법 제정으로 시작 둘째는 국가중요시설, 인천공항, 총기휴대에 대한 언론보도가 많이 분석 셋째는 이번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 추진 정책에 따라 특수경비원들의 정규직화 에 대한 기대로 분석

2. 이론적 고찰(2/2)

선행연구(1/2)

연구자	주 제	분 석 내 용	
이상훈·조용철 (2020)	청원경찰법령 전면 정비 방안에 관하여 연구	특히, 청원경찰의 무기 및 관리, 정의, 벌칙규정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원경 찰에 대하여 국가중요시설을 지키는 경비의 한 축으로 보았다.	
송선제(2018)	우리나라 항만보안 운영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항의 운영을 위해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범위 확대와 징수요율의 인상이 필요하다. 그리고 보 안을 담당하는 회사의 보안소요비용 충당을 위해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며 국제항해선박과 항만시 설의 보안심사관을 분리하여 항만시설보안심사관의 자격요건을 경험과 지식을 중심으로 하고자 하 였다.	
변용남(2009)	항만보안위협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 시스템 개선에 관한 연구	첫째로 보안업무 담당 기관 간 공통비용의 지출이다. 둘째는 각 기관 간 협력관계가 미흡하며 셋째 는 항만보안관련 훈련의 미비를 들었다.	
김용근·황호원 (2019)	드론을 이용한 불법행위의 법적 개선방안 항공안전법 개정 방향 을 중심으로	첫째 일본을 사례로 소형무인기의 불법 및 위법 행위들에 대하여 법안을 제정 둘째 차후 드론의 시대를 준비하여 항공안전법상 행글라이더, 초경량비행 장치와 그 범위에 있는 동 력 비행장치, 무인 비행 장치, 기구류 등으로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용어들의 개념을 정리 셋째 기존 항공안전법의 강화를 통한 개선방안	
이경훈(202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진단 검사에 대한 이해	이 연구에서"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 성 우한 시에서 원인 미상의 집단 폐렴 환자들이 발생 하였다."고한다. 발생 초기에는 그 원인을 알 수 없었으나 전문가들은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거 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 SARS)을 의심하였다. 이후 중국 우한 시를 다녀온 홍콩, 대만, 싱가포르 사람들이 차례로 발열과 폐렴 증상을 보이면서 전염병은 점차 중 국 우한시 전역과 해외로 전파되었다.	
문정화·김수진· 성기옥(2021)	코로나-19의 두려움과 영향요 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	첫째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이 10점 만점에 6.35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 둘째 코로나-19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특성 요인으로 연령, 성별, 주관적 건강과 우울증 세로 코로나-19의 두려움이 높았으며 여성은 노년기일 때, 주관적으로 건강상태가 낮을수록, 우울 증세가 있을 때 코로나-19 두려움이 큰 것 셋째 코로나-19가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관계 특성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 일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유무, 지역소속감으로 조사 되었으며, 일상에서 평소에 도움을 받을 사 람이 없을 때와 가족관계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그리고 지역소속감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두려움 이 큰 것	

2. 이론적 고찰(3/1)

→항만보안 업무 관련 법률(2/1)←

담당부처	관련 법률	분 석 내 용
경찰청(범죄예 방정책과)	경비업법	경비업법 내 특수경비원 관련 내용은 제2조(정의), 제7조(경비업자의의무)7항8항9항, 제14조(특수경비원의 직무 및 무기사용 등), 제15조(특수경비원의 의무)이다.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주요사고 발생 시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다. 그리고 특수경비원은 항만보안의 중요 업무중 하나인 검문검색 업무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획재정부(관 세제도과)	관세법	관세법 '제329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⑤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5조에 따른 물품 또는 운송수단 등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업무의 일부(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휴대하는 물품 및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 사용하는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에서 '국제항을 출입하는 자가휴대하는 물품 및 운송수단에 대한 검사에 관한 업무에 한정하여 위탁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항만의 보안과 관련하여 위 법률의 내용으로 세관과의 연관성이 발생하여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들이 전문성과 상관없이 휴대물품을 검사하고 있다.
법무부(공안기 획과)	국가보안법	제4조(목적수행) 1항의1. 형법 제92조 내지 제97조ㆍ제99조ㆍ제250조제2항ㆍ제338조 또는 제340 조제3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형법제 제340조(해상강도) ①다중 의 위력으로 해상에서 선박을 강취하거나 선박내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정보원(국 가정보원)	국가정보원법	국제 및 국내 테러, 반국가단체활동, 북한의 도발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며 활동하는 국가정보원 과 국제항만의 연결관계가 되는 국가정보원법을 분석하였다.
국토교통부(물 류정책과), 해양수산부(항 만물류기획과)	룰류정책기본법	"물류보안"이란 공항·항만과 물류시설에 폭발물, 무기류 등 위해물품을 은닉·반입하는 행위와 물류에 필요한 시설·장비·인력·조직·정보망 및 화물 등에 위해를 가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 즉 테러행위의 예방이란 이야기가 된다. 이는 물류정책기본법에서 항공을 빼면 물류보안이 항만보안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물류정책기본법은 발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항만보안이나 보안시설관리, 보안시설개선 등은 미약한다.
국가정보원(국 가정보원)	보안업무규정	국정원은 보안 기본정책을 수립하고 연구하며 보안업무를 표준화 하고 있다. 그리고 대부분이 비밀, 업무비밀 등 업무담당자에 관한 내용이지만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의 부분은 시설에 관한 것이다.

2. 이론적 고찰(3/2)

→항만보안 업무 관련 법률(2/2)←

담당부처	관련 법률	분 석 내 용
법무부(국제형 사과), 해양수산부(해 사안전관리과)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 해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항만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용어들 중 선박의 정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대한민국 국적의 국내선과 외국국적의 외국선에 대하여 국제항만에 근무하는 보안담당자들에게 필요한 연구이다. 외국인들이 타고 있는 선박이라도 대한민국 국적이면 국내선이 되고 한국인들이 타고있는 선박이라도 외국 국 적 선박이며 외국선이 되는 것이다.
경찰청(위기관 리센터)	청원경찰법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이하 "청 원주"(請願主)라 한다}와 배치된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경찰관의 직 무를 수행한다. 청원경찰의 직무는 관할구역 내에서 경찰관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다. 특수경비원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다.
경찰청(생활질 서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총포 화약법)	국제항만은 외국인들이 국내법을 잘 모르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다. 대표적인 예로 "도검"이란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칼・검・창・치도(雉刀)・비수 등으로서 성질상 흉기로 쓰이는 것과 칼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미만이라 할지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것. 이라는 내용처럼 외국인 또는 내국인도 잘 알수없는 법률등이 있다.
법무부(외국인 정책과)	출입국관리법	외국선원의 출입은 법에 따라 법무부직원이 하게 되어있다. 그러나 항만에서는 법무부 직원이 아닌 부산항보안공사 직원들이 하고있다.
국방부(합동참 모본부 통합방 위과)	통합방위법	외국에서 테러단체와 문제가 생기거나 북한이 도발 할경우 항상 항만은 국가중요시설로 보안상태 가 격상되어왔다. 이는 통합방위법 내 목적과 정의에서 찾아 확인 할 수 있었다.
국토교통부(항 공보안과)	항공보안법	항만에 적용되는 업무의 범위를 항공에서는 명확하게 법률로 구분하였다. 항공은 항만에 비하여 업 무가 단순하고 보안시설이 잘가추어져 있는 반면 법률이 효률적이고 보안요원의 업무 한계가 명확 하다.

2. 이론적 고찰(3/3)

→항만보안 업무 관련 법률(2/3)←

담당부처	관련 법률	분 석 내 용
해양수산부(항 만정책과)	항만법	항만보안과 관련되기 보다 정의에 가까운 법률들이 더 많다. 항공보안법과 비교하여 보안의 측면에 서 항만법은 많이 부족하다.
해양수산부(해 사안전정책과)	해사안전법	해사안전법 내 질병이나 항만보안 관련 내용이 없다.
해양수산부(항 만물류기획과)	항만공사법	항만공사법에 전국보안공사가 전국항만공사의 자회인 근거를 법률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제8조1항의 항만의 경비,보안 등 관리운영에 관한 사업을 자회사에 위탁 수행한다. 항만공사의 승인 여부에따라 보안공사의 업무 범위와 예산 등이 조절된다. 이는 코로나19 등 질병 사황에서 보안공사 자체예사편성이나 대책을 세우기에 부족하다. 원활히 위험에 대응 하지 못한다.
해양수산부(해 사안전관리과), 해양수산부(항 만운영과 - 항만 보안),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 안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선 박항만보안법)	항만보안의 핵심 근거가 되는 법률이다. 그러나 법률 내 코로나-19 팬데믹, 각종감염성질병 등과 관련하여 대책이 부족하다(질병관련 내용 없음). 그러나 관련 법률 전체가 연구가 필요한 중요한 내용으로 부산항만보안의 근거가 되며 법률의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해양수산부(항 만운영과)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 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 리요령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의 보안을 위해서 사용 되어야한다. 다만 해당 부두의 보안시설관리 주체는 운영사이기에 일부를 운영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보안공사는 항만공사의 자회사 이기에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와 사용에는 아직 정확한 역할이 없다.
경찰청(규제개 혁법무담당관실)	경찰관직무집행법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의 업무범위를 구분하는 중요는 법률이다.

2. 이론적 고찰(3/4)

→항만보안 업무 관련 법률(2/4)←

담당부처	관련 법률	분 석 내 용
행정안전부(안전기획과-총괄),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안전점검, 안전조치명령), 행정안전부(재난대응훈련과-재난대비훈련, 종사자교육), 행정안전부(재난대응정책과-위기관리매뉴얼, 재난사태, 재난 예보·경보 등 응급조치), 행정안전부(복구지원과-피해신고, 복구계획, 특별재난지역), 행정안전부(재난보험과-재난보험),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재난관리기금, 특별교부세), 소방청(119구조과-긴급구조), 해양경찰청(수색구조과-긴급구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국제항만은 국가 중요보안시설로서 항만 운송과 관련하여 태풍, 해일 등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다.
질병관리청(감염병정책총괄과 - 감염병 기본계획 등 총괄), 질병관리청(위기대응총괄과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등), 질병관리청(감염병진단관리총괄과 - 감염병 병원체 등), 질병관리청(예방접종관리과 - 예방접종), 질병관리청(생물안전평가과 - 고위험병원체), 보건복지부(질병정책과-중앙감염병전문병원, 내성균 관리대책, 수출금지, 감염취약계층의 보호조치, 손실보상)	감염병예방법	코로나-19는 발생 초기 제2조 정의에서 분류한 관리대상 전염병이 아니었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7항의3은 항만관리주체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외 될 수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4조 17에 관리대상 해외신종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 마련에서도 국제항만에 관한규정이 미비하다.

2. 이론적 고찰에 따른 업무 연구

━• 코로나-19 팬데믹과 항만보안 업무연구 ●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기존 항만보안 업무는 감염성 질병 관련 업무에 취약한 면이 있었음.
 - 선행연구로 기존 항만보안 업무의 향상을 위해 감염성 질병 관련 업무개선 요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함.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만보안의 업무개선 요인]

개선요인	내 용
감염성질병	 우리나라의 항만보안 업무는 전통적 보안업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음. (밀수, 밀입국, 테러예방 등)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바이러스성 질병이라는 보안 위해 요소로부터 항만을 지키는 것도 항만보안 업무라는 인식이 필요하게 됨.
인력운영	 현재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으로 나누어 운영되는 항만보안 근무자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인천항보안공사는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들이 근무, 부산항보안공사는 전원 청원경찰이 근무 등) 국제항만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른 업무가 필요한 영역으로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보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 업무에 적합함.
감염성질병 관련 업무 예산	 국제항만을 소유한 주체와 보안을 담당하는 주체가 다른 상황에서 항만시설보안료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항만의 소유주가 항만시설보안료를 관리한다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짐. 항만시설보안료의 예산 관리에 감염성 질병 관련 시설, 장비, 인력 등의 예산 편성이 필요함.

3. 항만보안 업무 실태분석(1/1)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만보안 업무 ◆─

감염성 질병 초기

- 초기 항만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의 과거 사스, 메르스 등의 업무경험으로 항만을 통한 확산 방지.
 - 행정지원, 보안요원들의 과거 업무경험, 적절한 방호물품지원 등으로 초기 방역에 효과를 보임.

감염성 질병의 확산

● 이후 지속된 코로나-19로 부산항의 경우 러시아 선박 선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가 항만하역을 담당하는 노조원들을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됨.

감염성 질병 확산과 항만보안 업무

- 국제항만의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코로나-19가 보안요원들에게 감염 시 인력운영의 문제점 발생.
- 국제항만 보안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여러 법률들(해양수산부, 질병관리청, 항만공사 등)의 단일화되지 못한 행정업무의 문제점 발생.
-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관계기관과의 기초 정보 공유의 문제점 발생.

3. 항만보안 업무 실태분석(1/2)

→ 항만보안 인력 업무 실태 분석 ◆ │

청원경찰

① 국제항만은 군대, 경찰, 세관, 법무부, 해경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총기의 소지'와 청원경찰의 '경찰관직무집행법' 행사 유무가 꼭 필요한 영역임.

특수경비원

● 특수경비원의 경우 총기는 소지 할 수 있으나 사용에 제약 많으며 청원경찰과 달리 '경찰관직무집 행법'을 행사 할 수 없어 불신검문이나 임의동행을 요구할 수 없음.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특수경비원)의 업무 타당성 비교

- 국제항만의 보안 업무와 관련하여 특수경비원은 검문검색, 범인체포 등의 업무수행 시 법률위반사례 발생의 가능성이 높음. (경비업법은 경비업법 외 업무수행을 법으로 금지함)
- 국제항만 특수경비원은 청원경찰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다른 대우를 받는 실정임.
 - 특수경비원은 경비업법 외 업무를 하면서 임금은 청원경찰임금(청원경찰 고시액)보다 낮음.
- ●청원경찰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담당구역 내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 함.
 -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 내용은 불신검문, 응급구호, 위험발생방지, 범인체포 등이다.

3. 항만보안 업무 실태분석(1/3)

→ 항만시설보안료 체계분석 ◆

항만시설보안료

-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방법 및 징수요율 산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과 관련한 법률규정으로 해양수산부에서 관할 함.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공사에서 징수함)
- 항만시설보안료와 관련하여 항만시설은 소유자와 위탁운영사가 있으며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가 있음. (법률적으로 항만시설보안료가 최종적으로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로 가야함)
- ① 항만시설보안료에 장비, 시설, 인력 운영에 관한 예산과 추가로 감염성 질병 관련 예산의 확보가 법률적으로 필요함.
- 항만시설보안료 흐름도 및 개선 뒤 흐름예상도

항만시설보안료 항만공사징수 항만공사 운영

=> 일부 위탁운영사 지급 운영

기존의 흐름도

항만시설보안료 항만공사징수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에 지급 및 운영

개선 뒤 흐름예상도

4.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항만보안 업무개선 방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성 질병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 →——

1. 감염성 질병 관련 업무개선 방안

-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성 질병에 대해 항만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의 보안업무에 감염성 질병 관련 업무 신설. (감염병 전담 업무부서 신설)
- 감염성 질병과 관련 보안요원의 합법한 업무수행을 위해 법률 개정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추가예산 확보.
- 감염성 질병과 관련하여 보안요원들의 업무 향상을 위한 관련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확립.

2. 보건안보 및 바이오 보안에 대한 연구

- 코로나-19 팬데믹의 발생으로 나라 간 국경이 봉쇄되고 감염성 질병의 확산 우려 등으로 국경의 보안은 강화됨.
- 뉴질랜드는 'Biosecurity 2025'의 추진으로 국민, 관련업체, 원주민, 중앙 및 지방 관계기관들 간의 바이오보안을 위한 파트너 십 확대운영.
- 바이오보안의 개념은 1993년 뉴질랜드에서 바이오보안(Biosecurity)법을 생물학적 위협과 관련하여 포괄적인 의미로 최초 채택함. 2001년 미국 국립 농업협회(NASDA)는 바이오보안(Biosecurity)을 "생물학적 위협에 대한 방어와 위험 관리에 관한 내용"으로 정의함.
- 우리나라도 바이오보안에 대한 인식의 홍보와 항만보안 업무 관련 바이오보안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함.

4.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항만보안 업무개선 방안

→ 항만보안 인력운영 방안 ◆

1. 청원경찰과 특수경비원

- 청원경찰법과 특수경비원법을 비교한 결과 업무의 효율성은 청원경찰이 좋고, 운영의 효율성은 특수경비원이 효율적임.
- 국제항만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관의 청사, 발전소, 연구소 등을 관리하고 방호하는 특수경비원보다 전문 성이 있는 청원경찰이 법무부 출입국 업무, 세관의 소지품 검사 및 밀수방지 업무, 경찰의 밀입국 업무, 군대의 테러방지업무 등에 적합함.
- 경비업법에 의한 특수경비원들은 보안업무의 효율성 면에서 청원경찰 대비 낮은 임금과 동일한 노동으로 효율성은 높음. 그러나 특수경비원들의 업무 환경개선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청원경찰로의 단일화가 필요함.

2. 항만보안 인력운영 개선방안

- 첫째, 국제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요원들의 청원경찰로 단일화.
- 둘째, 감염성 질병 관련 업무 전문가의 필요성.
- 셋째, 코로나-19 이후 달라질 업무 환경 변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감염성 질병 전문교육을 통한 보안요원 능력 향상.

4. 코로나-19 팬데믹 관련 항만보안 업무개선 방안

● 감염병 관련 항만시설보안료 현실화 방안 ●

1.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현황(부산항을 중심으로)

- 부산항만공사가 2019년 처음으로 거둬들인 부산항의 항만시설보안료는 25억 원에 달했음. 19년 1~9월 징수한 선박의 보안료는 약 13억6400만 원, 화물의 보안료는 약 5억43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선박의 보안료는 18억 1000여만 원, 화물의 보안료는 7억2000여만 원이 추가 되어 25억 정도가 되었음. 그리고 19년 한일 항로를 오가는 여객선과 국제 크루즈선의 승객에 부과한 여객 보안료는 5500여만 원이었음.
- 선박의 보안료는 t 당 3원, 컨테이너 6m짜리 개당 86원, 벌크화물 t 당 4원, 승객은 1인당 100원(6세미만 어린이 제외)을 징수함. 그리고 환적 컨테이너와 빈 컨테이너는 항만시설보안료 징수에서 제외함.
- ◎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지급 대상 부두로는 운영사 북항 4개, 신항 6개, 감천항 1개 임.

2. 항만시설보안료 현실화 방안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항만시설보안료 관련 내용이 있으며, 전자의 법률은 항만보안을 위한 법률 임.
- 항만시설보안료는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관리운영 하여야 함.
 - 국제항만은 항만공사법에 따라 항만시설 소유자와 위탁운영사가 있으며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가 항 만보안업무를 하고 있음.
- 감염성 질병 관련 업무의 예산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항만시설보안료의 현실화 및 법률의 일부 개정이 필요함.

5. 결 론

→ 연구요약 및 시사점 ◆

■ 코로나-19 이후 항만보안 업무개선 방안 연구 요약

- [1]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감염성 질병에 대한 보안강화 방안으로 감염성 질병 관련 업무의 신설과 보건안보, 바이오보안 개념의 정립이 필요하며 관련 업무의 확장이 필요함.
- [2] 국제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보안요원은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로 나누어지며 다양한 업무와 바이오보안 관련 업무의 확장을 위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청원경찰이 항만보안 업무에 더 적합함.
- [3] 항만시설보안료를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현실화 방안과 보건안보 및 바이오보안 관련 감 염성 질병 예산 확보를 위해 관련 법률의 현실화가 필요함.

■ 실무적 시사점

- [1] 국제 항만의 항만자동화에 따른 보안업무의 확장
- [2] 코로나-19 관련 감염병 발생 대비 항만출입 절차 및 출입증 개선 방안
- [3] 항만보안 업무 관련 행정 부처 통합 및 업무조직의 변화 방안

5. 결 론

→ 연구 한계점 ◆

- [1] 연구를 진행하며 우리나라 전국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들과 의견을 주고받고 싶었지만 지리적, 업무적 한계가 있었음.
- [2] 항만보안 시설, 장비, 인력 등에 대하여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내용을 연구에 기술하고자 하였으나 국제항만 이 국가중요시설로 업무와 관련한 자료가 대부분 대외비라 많은 부분을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음.
- [3] 국제항만의 보안업무가 인천항, 광양항, 울산항 등 다양하게 분포 되어 있었지만 전국 항만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실태 파악이 어려웠음.
- [4] 관계기관 및 관련기관, 항만운영사 등에 보안업무 통합(해양항만보안법, 해양항만보안청)과 관련한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가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한계가 있었음.

연구 향후 과제

- [1] 항만보안과 관련한 관계기관들, 운영사들, 협력업체들의 다양한 전문가 의견청취가 중요한 연구 관점이 되어야함.
- [2] 다른 나라 또는 지역의 국제 항만들에 대한 연구와 항만의 보안을 담당하는 회사들의 업무 실태를 비교하여 다양한 업무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감사합니다.

Q&A